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산불 예방 및 진화 사항 포함 의무화〉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5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1.
3. 회부연월일 : 2026.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② (생략)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④ ~ ⑦ (생략)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u> 7.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송전·변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구역, 시행기간, 소요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환경영향평가) 등 7가지 핵심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정안은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 간 산불 예방 업무협약(MOU)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실시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필수 포함 사항 현황 및 개정안]

구 분	법정 필수 포함 사항 (제5조제3항)
현행법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 7. 토지명세 및 매수, 보상계획
개정안	6의2.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 (신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재난으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고 산림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적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실시계획의 법적 효력 범위와 실증적 산불 발생 이력, 타 법령에 따른 부처별 고유 역할, 그리고 기존 재난관리 체계의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효력 기간 및 대상 설비의 실증적 화재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허가 성격의 계획으로서 전원설비 '건설기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함.

건설 중인 전원설비는 아직 전력이 통전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일반 구조물 수준에 불과함.

실제로 관련 부처 회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원개발 건설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산불 이력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실질적인 산불 위험이 존재하는 '운영' 단계가 아닌 '건설' 단계에 한정된 실시계획 승인 요건에 산불 예방 및 진화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규제의 비례성 및 국가 재난 대응 주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 체계상 산불의 예방 및 진화는 「산림재난방지법」 및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며¹⁾, 산불 진압 지원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청의 법정 역할임²⁾.

[산불 예방 및 진화 관련 주요 법정 권한 및 역할 비교]

주 체	근거 법령	법정 주요 역할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보호법」	산불 예방 및 진화 계획 수립, 산불 진압 총괄
소방청	「소방기본법」	소방지원활동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 활동)

1)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주 체	근거 법령	법정 주요 역할
전원개발사업자 (발전/송변전 사업자)	-	산불 진화에 대한 직접적 법정 의무 없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재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산불 예방 업무를 법적으로 의무 부과한 타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음.

전원개발사업자에는 발전공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진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민간사업자에게까지 "진화"라는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대응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규제 비례성 및 부처 간 역할 분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관련 부처인 산림청 및 소방청 역시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찬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셋째, 기존 국가 재난관리 체계 및 부처 간 업무협약(MOU)에 기반한 실질적 이행 실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공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³⁾, 건설 현장 비상 대응매뉴얼을 운용하고 매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재난관리책임기관)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

제23조(집행계획)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인 재난 예방 조치를 이행 중임.

일례로 '건조·강풍지역 산지 배전선로 특별보강사업'을 통해 예산을 투입하여 선로 지중화⁴⁾ 및 절연케이블 교체를 진행하고 있음.

[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내 산지 배전선로 특별보강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전력 설비원인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강풍지역 특고압 전선 특별보강
사업 규모	산지경과 배전선로 총 362c-km / 총 사업비 664억 원
사업 기간	2022년 ~ 2027년 (6개년 연차 사업)
사업 방법	특고압 절연전선을 가공절연케이블 또는 지중직매 ¹⁾ 로 교체

주) 지중직매(地中直埋): 전력 케이블을 별도의 관로나 전력구(터널)에 넣지 않고, 땅을 파서 케이블을 직접 묻는 시공 방식.

*자료: 한국전력공사, 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자료 재구성

아울러 개정안은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 간의 업무협약(2024.3.15. 체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협약을 근거로 산불 예방 조치와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산불 예방 업무협약(MOU) 세부 이행 실적]

협력 분야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2025년 4개 사업(19구간, 13.4ha) 조성 완료, 2026년 관련 지자체 MOU 체결 및 사업 추진 중
산불 감시 및 우선 진화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상황실 운영 및 한전·협력사 인력(12,148명) 비상근무 체계 유지

4) 지중화(地中化) 사업: 가공 전선로를 공중이 아닌 지하에 매설하여 강풍, 산불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사업.

협력 분야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
CCTV 구축 및 영상 공유	2025년 송전철탑 활용 CCTV 118개소 설치 완료 (정부예산 60억 원 투입), 2026년 추가 설치 중
산불위험목 관리·제거	송·배전선로 인근 산불위험목 연간 약 150만 그루 이상 정비 지속 시행 중
산불예방 지자체 지중화	연간 지중화 사업비의 20% 이내(약 300억 원 수준) 배정, 2026~2030년(5년) 한시 운영
내화수림대 ¹⁾ 조성	건설사업 훼손지 복구 사내기준(녹화공법 수종) 개정 및 시범사업 복구공사 시행
산불확산 지연제 확보	변전소 보호용 산불확산 지연제 52톤 확보 및 대형산불 발생 시 현장 지원(2025.3 의성 산불 16톤 지원)

주)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산불 발생 시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활엽수 등 내화수종)를 띠 모양으로 심어 조성한 숲.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기존 재난안전법 체계와 부처 간 협약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 지원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바, 전원개발촉진법에 별도의 법적 의무를 중복하여 신설하는 것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하였음.

넷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적 입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력설비와 관련된 산불 위험은 주로 건설이 완료된 후 전력이 공급되는 '운영' 단계에서 발생함.

따라서 한시적인 건설 실시계획에 진화 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의 방식보다는, 전력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요구되는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실질적일 수 있음.

이를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가 재난 관련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심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